



의료보험GUIDE

(VII)

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치과 진료비 심사지침

'89.3.24. (제11차 중앙진료비 심사위원회)

1	오라메디 연고	구내염등 상병에 처치시 도포한 오라메디연고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	구내염 처치시 도포제로 사용되는 오라메디연고의 사용량은 1/3약 도포시 0.25g 정도로 소량 소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함이 타당함.	
2	Calcium hydroxyde	발수, 근치, 근충 치치시 치수복조제 calcium hydroxyde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	Calcium hydroxyde는 근관침까지 충전하기는 어려우므로 근관치료 및 근관 충전제로 사용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효능·효과를 고려하여 치수복조제로 사용시에만 인정한다.	
3	동일 환치에 근관치료와 농양 절개술 동시 산정에 대하여	근관치료시 농양 절개(I & D)를 동시 산정할 경우 근관 치료료만 인정한다.	진료수사기준액표 제10장 차11 주(1)에 의거 환치에 기인한 치근막염의 처치 및 구강내의 누공에 대한 처치등을 포함한 것임.	
4	고정장치제거시(차28) 산정된 외과술후 처치에 대하여	고정장치제거시 산정된 외과술후 처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	고정장치 제거시 산정된 외과술후 처치는 고정장치에 대한 dressing이므로 소정처치료에 포함됨.	
5	동시에 2개 소이상 구강내소염술, 실시에 대하여	동시에 2개소 이상 구강내 소염술을 실시하더라도 구강내소염수술(차45) 소정금액만 인정한다.	(보사부급여 31510-8792호 '86.7.16)에 의거 치과수술료 항목중 산정기준이 차당, 약당 1/3 약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를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함이 타당함.	